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9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9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단50860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길우, 김주표

변론 종결2020. 3. 31.

판결 선고2020. 4.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단5086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4,678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5. 14. 접수 제36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항정수

판사최호식